

		심의결과	원안대표가결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15	3	1978. 2. 2	총재 김성환

의 안 "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"  
일부 개정

의결사항 "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"을  
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의관계  
법구조함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

제의취지 최근 국제수지의 호전과 정부보유양곡의 재고  
누적에 따른 통화공급의 <sup>증가</sup> 현저한 위  
금융기관의 과도한 여신팽창이 우려되고 있  
음에 비추어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허저율을  
인상하여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통화의  
안정적 공급을 이룩하고자 본건 전가와 같이  
의결할 것을 제의함.

참고사항 1. 제의관계 법규초항

(한국은행법 제57조)

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

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 
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
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예금지급준비금의율은 제58조에 규정

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  
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  
로 적용한다. 다만 농림협동조합중앙회

및 농림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

703

한다

